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 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15.1.6.)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자치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안 별표)

- 관외출장시 숙박비의 지역별 상한 기준액 정함
운임과 숙박비 정액지급 ⇒ 실비지급
- 숙박비 지급 기준을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구분	현 행					개 정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small>(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small>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나.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안 제5조제4호의2)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처예규)」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 반영

다. 정부조직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3조, 제16조, 제18조, 별표 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6. 12. 9. ~ 12. 2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사항

○ 개정 중(입법예고):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의령군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호 중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를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제1항 단서”를 “영 제18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24조제5항”을 “영 제2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27조”를 “영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별표 1”을 “영 별표 1”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u></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u>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u></p> <p>2. <u>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u></p> <p>3. <u>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4. <u>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거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5. <u>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u></p> <p>6. <u>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u></p>	<p><u>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u></p> <p>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p> <p>1. <u>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u></p> <p>2. <u>영 제17조</u>----- -----</p> <p>3. <u>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u> -----</p> <p>4. <u>영 제18조제1항 단서</u>----- ----- -----</p> <p><u>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한다.</u></p> <p>5. <u>영 제24조제5항</u>----- ----- -----</p> <p>6. <u>영 제27조</u>-----</p>

현행	개정안
<p>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인사혁신처장" ----- ----- ----- ----- -----</p>
<p>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p>	<p>8. 영 별표 1----- ----- ----- ----- ----- ----- -----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p>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비고 1.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